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 폐지 등〉

■ 채현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37호)

2026. 3.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취지	3
2.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 등을 유통·판매·사용한 경우를 형식승인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신설	8
3.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표시한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 강화 등	18
4. 소방용품에 대한 제재 처분의 효과가 해당 소방용품과 변경인증된 소방용품에도 미치도록 하고 ‘품목’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제재 처분 관련 미비점 정비	26
5.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제도 폐지	3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채현일의원 등 13인
2. 제안연월일 : 2026. 1. 14.
3. 회부연월일 : 2026. 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품질의 신뢰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형식승인의 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능인증 소방용품이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합격표시를 허위로 붙이는 행위에 대하여는 ‘성능인증 취소’ 또는 ‘제품검사 중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처분의 비례성과 형평성에 위반되는 문제도 있음.

한편, 현행법은 품질이 우수한 소방용품에 대한 ‘우수품질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실적이 수년간 전무하고 소방용품 형식승인제도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 결정된 바 있음.

이에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관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하여 형식승인 제한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8호 신설).
- 나.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안 제39조제1항).
- 다.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단서).
- 라. 소방용품에 대한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함(안 제43조 및 제44조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취지

소방용품이란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와 같이 소방시설등¹⁾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물품을 의미함(법 제2조제7호).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의 구성용품인 소방용품이 적정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소방용품의 품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소방청은 ① 소방청장이 정하는²⁾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도록 하는 소방용품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②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생산된 소방용품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제품검사³⁾를 실시하며, ③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인증) 번호를 제품에 표기하고, 제품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합격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형식승인은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되어 있고, 성능인증은 행정안전부령(행정규칙)과 소방청 고시로 정하고 있음.
- 3) 형식승인·성능인증 시험이 견본품 또는 시제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제품검사는 형식승인·성능인증 이후 제조사에서 양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식으로 소방용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음.

“형식승인”이란 품질의 신뢰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의 감지·소화·피난 등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소화기 등 32개 소방용품에 대해 소방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형식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은 후 제품검사를 받아 제조·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고(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성능인증”이란 임의적 인증으로서 화재의 감지·소화·피난 등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소화전함 등 52개 소방용품에 대해서 제조자나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후 제품검사⁴⁾를 받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제40조제1항),

“우수품질인증”이란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추가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⁵⁾.

4) 형식승인·성능인증 시험이 견본품 또는 시제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제품검사는 형식승인·성능인증 이후 제조사에서 양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5) 현행법에 따른 인증제도 개요, 형식승인/성능인증 절차 및 형식승인/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 현황은 [참고 1, 2, 3] 참조

<소방용품 품질인증 개요>

구분	형식승인 (73년~)	성능인증 (86년~)	우수품질인증(14년~)	기타 (KFI인증)
근거	제37조	제40조	제43조 ⁶⁾	KFI 자체규정 ⁷⁾
대상 지정 기준	화재의 감지·소화· 피난 관련 기본적 소방용품	화재의 감지·소화· 피난 등에 사용되는 보완적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 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	기타 화재· 공공안전을 위하여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소방용품
인증 의무	의무사항	임의사항	임의사항	임의검사
	미검정품 유통불가	미검정품 유통가능	미검정품 유통가능	미검정품 유통가능
인증 절차	신청서 접수→신청 서류 검토→형식시 험 및 시험시설 심 사→형식승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신청 서류 검토→성 능시험 및 시험시 설 심사→성능인 정서 발급	신청서 접수→신청 서류 검토→인증시 험 및 품질관리체 계 평가→우수품질 인증서 발급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검토 →성능시험 및 시험시설 심사 →KFI인증서 발급
	※ 인증업무 위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제50조제2항)			한국소방산업기 술원 자체 수행
인증 이후 유통 전 품질 관리	제품검사(양산제품 대상)(제46조제1항) -생산제품검사(생산단위별):수시검사 → 제품판매 -품질제품검사(일정주기별): 정기검사 → 제품판매 ※업무위탁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제50조제3항)		우수품질관리체계에 따른 유통(일정주기 별 재평가)	제품검사(양산제 품 대상)(내규) -생산제품검사: 수시검사→제품판매 -품질제품검사: 정기검사→제품판매
품목	소화기 등 32개	소화전함 등 52개	소화기 등 32개	내진스토퍼 등 35개 (소방장비 별도)

(자료: 소방청)

- 6) “우수품질인증”이란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추가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7) KFI인증이란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품목 이외에 소방차 등 64개 품목에 대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여부 판단하는 임의검사임.

그런데 현행 제도를 보면, ①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의 취소 등과 같은 행정상 제재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성능인증 소방용품이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합격표시를 허위로 붙이는 행위에 대하여는 ‘성능인증 취소’ 또는 ‘제품검사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비례성과 형평성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으며,

③ 형식승인이 취소되거나 성능인증이 취소되어도 취소처분 전후의 변경승인⁸⁾을 통해 얻은 유사 모델의 인증번호로 계속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이 미비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고,

④ 현행법은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다시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39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 품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2년 이내에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는 범위를 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8) 현행법은 인증(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후, 해당 인증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 변경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제38조 및 제41조).

한편, ⑤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의 경우 우수품질 생산을 장려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인증 실적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관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는 폐지하려는 것임.

소방청은 현행 소방용품의 품목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방용품 행정처분의 명확화 및 형평성 있는 처분 등을 하도록 개선하며 현행 실효성 없는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2.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 등을 유통·판매·사용한 경우를 형식승인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신설

개정안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 소방용품의 형상·구조·재질·성분 등(이하 “형상등”이라 함)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형식승인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소방청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 ----- ----- ----- ----- ----- ----- 제1호·제3호·제4호 의2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4의2.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5. (생략)	5. (현행과 같음)
	부칙

현행	개정안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 제37조는 주요 소방용품의 품질의 신뢰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소방용품의 제조·수입업자가 의무적으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도록 하고(제37조제1항 및 제3항),

제39조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았거나(제1호), ② 형식승인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았거나(제3호), ③ 형식승인 후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면서도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거나(제5호) ④ 형식승인 후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제5호)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식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1호·제3호·제5호)⁹⁾,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방법·순서·

이는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당시와 다른 제품(예: 성능 미달 제품 등)이 유통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그 파급력을 고려하여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보임¹⁰⁾¹¹⁾.

또한, 현행법은 누구든지 ㉠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

합격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용품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제3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4. 제품검사 시 제37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10) 서울행정법원은 형식승인 취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형식인증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음.(서울행정법원 2023.8.17. 선고 2022구합63836)

“ 형식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형상이 변경된 경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인지,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인지에 관계없이 모두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소방용품이 형식인증 시험을 통과할 당시의 제품의 형상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제품의 형상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알려 피고*로 하여금 제품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점.....”

(* 피고는 소방청장을 의미함)

11) 소방청은 현행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는 ‘행정청의 관리감독(제품검사 과정 등) 하에 확인 및 시정조치가 가능한 유형의 위반사항’으로, 최초 위반 시 ‘시정명령, 제품검사 일시 중지’ 등의 처분을 통해 유통과 별개로 개선이 가능한 사안이나,

제1·3·5호는 형식승인 제도의 근간을 침해하고 승인 당시와 다른 제품이 유통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라고 설명함.

㉔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소방용품, ㉕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면서(제37조제6항),

이를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그 제조자·수입자·판매자·시공자에게 수거·폐기·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37조제7항),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제57조제5호)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단¹²⁾과 위반한 자들에 대한 벌칙 규정은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제37조제6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취소와 같은 행정상 제재 처분의 근거는 마련하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¹³⁾.

- ▶ (제1호) 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형식승인
↳ (결과) 유효하지 않은 승인품을 기준으로, 제품검사를 거쳐 현장에 유통·설치
- ▶ (제3호) 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제품검사
↳ (결과) 유효하지 않은 양산품이 현장에 유통·설치됨
- ▶ (제5호) 변경승인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변경승인
↳ (결과) 임의변경된 양산품이 현장에 유통·설치됨
※ '변경승인'은 최초 형식승인과 동일 효력

12) 다만, 소방청은 2020년 이후에 제37조제6항과 관련한 행정명령은 없었다고 설명함.

현행법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변경승인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필요적 취소 사유로 규정한 취지가 인증당시와는 다른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 ㉡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소방용품, ㉢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 역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변경승인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식승인 제도를 훼손하고 성능미달 제품을 유통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고 보임.

따라서, 형식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형식승인 관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13) 주요내용 나. 참조

<형식승인 관련 행정제재: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개정안
처분 대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자	
처분 내용	- 형식승인 취소 ※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음(§37②) -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 중지	
처분 요건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 필요적 취소사유	
	2.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 필요적 취소사유	
	4. 제품검사 시 제37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¹⁴⁾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⑤ 소방용품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소방청장 고시 예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신 설>	4의2.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u>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I)</u> 2. <u>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II)</u> ¹⁵⁾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¹⁶⁾ ☞ 필요적 취소사유
	5. - 제38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필요적 취소사유	

14) 소방청은 ‘제품검사 시 기술기준에 미달’의 의미는, 해당 소방용품이 인증을 득한 이후 제품검사 과정에서 기술기준에 미달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함.

15) 현행법은 형상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제38조제1항).

16) 현행 제도는 ‘제품검사 합격 시 합격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는 바,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

다만, 개정안의 입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임.

첫째(Ⅰ), 형식승인의 취소 처분은 수범자에게 불이익한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수범자가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 미리 알 수 있어야 하고 행정청 또한 객관적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법문을 명확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¹⁷⁾.

개정안의 법문 규정은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제1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 [제2호]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소방용품, 또는 [제3호]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임.

이 중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하도록

은 ㉠ 제품검사를 받은 후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않아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합격표시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17)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 38면.

하는 내용([제1호])은 애초에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개념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둘째(Ⅱ), 안 제39조제1항제4의2호의 내용 중에는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현행법 제37조제6항제2호)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현행법 제39조제1항제5호의 내용 중 “제38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이므로, 이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셋째(Ⅲ), 개정안의 내용은 아니지만 법률 내용의 일관성 측면에서 제39조제1항제5호의 법문을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현행법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과 관련해서는 “제41조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42조 제1항제5호).

이에 비해 소방용품 형식승인의 필요적 취소사유는 “제38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만 규정하여(제39조제1항제5호), 동일한 내용에 대한 법문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음.

이에 성능인증 제도와와의 체계적 정합성을 고려하고 수범자의 법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제39조제1항제5호의 법문을 “제38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로 법문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변경인증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현행법의 법문 표현 비교>

형식승인 관련	성능인증 관련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⑩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시험을 함께 실시하고 하나의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⑥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제38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성능인증의 변경) ① 제4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 관련	성능인증 관련
제3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5. <u>제38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u>	제42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u>제41조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u>

3.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표시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현행법에서 제품검사 중지 또는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는 행위,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개정안은 이를 필요적 취소 사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2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2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 ----- ----- ----- ----- ----- ----- -----. --- 제1호·제2호·제4호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40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제품검사를 받도록 하며(제40조제1항 및 제2항),

① 성능인증을 받았으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는 것, ② 성능인증을 받았으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는 것, ③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판매 목적으로 진열, 소방시설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제40조제5항)¹⁸⁾.

한편, 현행법 제42조는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i)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제1호 및 제2호), ii)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신청·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대상·절차·방법·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제5호)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면서,

iii) 제품검사 시 그 소방용품이 제품검사에 필요한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제3호), 또는 iv) ① 성능인증을 받았으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는 것, ② 성능인증을 받았으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는 것, ③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 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판매 목적으로 진열, 소방시설에 사용한 경우(제4호)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⁹⁾.

참고로, 이 법 시행규칙에서는 현행법 제42조제1항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1회 위반시 검사중지 6개월, 2회 위반시 취소”로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음.

1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3. 제품검사 시 제40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제4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5. 제41조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성능인증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현재 성능인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에서 소방용품 제품검사 중지 처분을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된 ① 성능인증은 받았으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는 것, ② 성능인증은 받았으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는 것, ③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판매 목적으로 진열, 소방시설에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이를 필요적 성능인증 취소 사유로 변경하려는 것임.

<성능인증 관련 행정제재: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개정안
처분 대상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	
처분 내용	- 성능인증 취소 ※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음(\$42②) -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 중지	
처분 요건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 필요적 취소사유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 필요적 취소사유	
	3. 제품검사 시 제40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²⁰⁾	
	제40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 성능인증은 받았으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한 경우 - 성능인증은 받았으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한 경우 -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판매 목적으로 진열, 소방시설에 사용한 경우	
(취소 또는 제품검사 중지 처분 가능)		☞ 필요적 취소사유
5. -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 필요적 취소사유		

20) ‘제품검사 시 기술기준에 미달’의 의미는, 해당 소방용품이 인증을 득한 이후 제품검사 과정 중 기술기준에 미달됨을 의미함

현행법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변경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성능인증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①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한 경우, ②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한 경우 역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변경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능인증 제도를 훼손하고 품질미달 제품을 유통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고 보임.

이에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하는 행위를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은 ③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판매 목적으로 진열, 소방시설에 사용한 경우에도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③에 해당하는 경우는 ③-(ㄱ) 성능인증은 받았으나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제품검사 합격표시 없이’ 판매, 판매 목적으로

진열, 소방시설에 사용한 경우, ③-(ㄴ)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하였으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판매, 판매 목적으로 진열, 소방시설에 사용한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임.

성능인증 제도는 ‘임의적’ 인증제도로 소방용품 제조자나 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소방용품 제조자나 수입자가 성능인증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능인증과 제품검사 없이 해당 소방용품을 시중에 유통시키는 것이 가능함.

따라서 ③-(ㄱ), ③-(ㄴ)과 같이 성능인증이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으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시중에 유통시키는 것도 이를 필요적 성능인증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2년간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 과도한 제재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참고로, 현행법 제42조와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i)과 ii)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회 위반시 바로 성능인증 취소처분의 대상이 되는 반면, iv)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회 위반시 6개월 검사중지 처분, 2회 위반시 취소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감사원은 2020년 감사보고서에서 “제품검사를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의 필요적 취소와 “제품검사를 아예 받지

않고 합격표시를 위조하여 유통시킨 경우”의 임의적 취소 간의 행정처분 수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는 ①, ②의 경우에 대한 지적으로 분석됨.

<감사보고서(소방안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실태, 2020) 중 발췌>

소방청은 품질관리규칙 제20조에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했다는 표시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성능인증 취소’보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분인 ‘제품검사중지’ 처분을 하도록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품검사를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법률상인증 취소 대상)”와 “제품검사를 아예 받지 않고 합격표시를 위조하여 유통시킨 경우”에 대한 불법행위의 정도와 이로 인해 성능미달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을 비교해 볼 때, 후자의 경우가 불법행위의 정도 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방청은 소방시설법의 위임에 따라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때에는 부정행위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방용품의 안전 위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행위별 처분수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실제로 이번 감사기간 중 [표 58]과 같이 2014년 이후 업체의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를 점검한 결과, 기술원은 2016년 2월 주식회사 000가 자동폐쇄장치(폐쇄15-4)의 제품검사를 부정행위 방법으로 받은 행위에 대해 성능인증을 취소한 반면, 2018년 10월에는 주식회사가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개폐口)의 제품검사를 아예 받지 않은 채 합격표시를 위조하여 납품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품검사 중지 처분을 하는 등 행정처분 규정이 형평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4. 소방용품에 대한 제재 처분의 효과가 해당 소방용품과 변경인증된 소방용품에도 미치도록 하고 ‘품목’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제재 처분 관련 미비점 정비

개정안은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이 인증 취소 또는 제품검사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소방용품 외에도 변경인증된 소방용품에도 동일하게 미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 제2항 및 제42조제2항 신설).

또한, “품목”을 소방용품의 기능·용도·구조 등에 따라 분류한 개별 항목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2조(정의)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품목”이란 제7호의 소방용품을 기능·용도 및 구조 등에 따라 분류한 개별 항목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생략) <u><신설></u>	제3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방용품 외에도 그와 변경승인으로 관련된 소방용품

현행	개정안
② (생략) 제42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생략) <u><신설></u> ② (생략)	<u>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2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생략) <u>② 성능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방용품 외에도 그와 변경인증으로 관련된 소방용품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법은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 품질에 대한 신뢰성과 성능을 확보하고 동일 품목에 대한 반복적·구조적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식승인 취소 처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제품검사 중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39조제1항),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2년 동안 동일 ‘품목’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영업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제39조제2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성능인증 취소 처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제품검사 중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42조제1항),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2년 동안 동일 ‘품목’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영업에 제한을 가하고 있음(제42조제2항).

그러나, 현행법 및 하위법령에는 “품목”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아 제재 대상이 되는 품목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에 따라 법령 해석을 통해 제재가 임의적으로 확대 적용될 우려가 있음.

또한, 법령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취소 또는 성능인증 취소 처분을 받고 동일 품목에 대해 2년 간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여도 해당 업체가 취소처분 전에 형식승인 변경²¹⁾ 또는 성능인증 변경을 신청해 별도의 승인번호나 성능인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어,

일부 소방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변경 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을 대상으로 계속 제품검사를 받아 영업활동을 지속하였음. 참고로, 이러한 편법적인 영업 행태는 2020년 감사원 감사²²⁾에서 발견되어 행정처분의 실효성 미흡 사례로 지적받았음.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및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한 변경 사항: 소방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품 및 구조 등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2. 경미한 변경 사항: 소방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부품 및 외관 등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기술원은 변경 사항에 대하여 형식시험을 한 결과 중요한 변경 사항이 형식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승인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하고,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형식승인서를 다시 발급하며, 경미한 변경 사항이 형식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2) 감사보고서(소방안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원, 2020. 3.

<감사보고서(소방안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실태, 2020) 중 발췌>

소방시설법 및 품질관리규칙 제9조에 따르면, 제조 업체가 이미 형식승인 등을 받은 소방용품의 부품·구조·외관 등을 일부라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원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새로운 승인번호를 부여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소방용품 제조 업체는 동일한 소방용품에 대해 구조나 규격이 일부 상이한 다수의 승인을 보유하고 있다. …… 이상과 같이,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업체는 기존의 다른 승인번호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형상 등을 일부 변경하여 새롭게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소방청에서는 법령을 위반한 업체의 해당 동일 품목 내 모든 승인번호 제품에 대한 검사 중지를 명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증 취소 후 6개월 이내의 동일 제품군 제품검사 사례>

(단위:개)

구분	소방용품	승인번호	제조업체	처분사유	처분일자
형식 승인 취소	소화기	수소13-17	해태소방	부정한 방법에 따른 형식승인 등	'14. 4. 8.
	소화기	수소13-11	(주)제이디산업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음	'14. 6. 23.
성능 인증 취소	소방용합성수지배관	합수11-33	(주)파라텍	제품검사를 받지 않음	'14. 7. 25.
	자동폐쇄장치	폐쇄15-4	(주)경진에스디에스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음	'16. 2. 22.
	비상문자동개폐장치	개폐16-28	(주)티엠아이	변경인증 없이 형상을 임의 변경	'19. 6. 27.
제품 검사 중지 (성능 인증)	소방용합성수지배관	폐쇄12-16	(주)누런	시험시설기준, 시정 미조치	'16. 6. 20.
	비상문자동개폐장치	개폐16-26	에스웜테크	제품검사를 받지 않음	'18. 10. 11.
	비상문자동개폐장치	개폐16-29	(주)티엠아이	합격표시 위조	'18. 10. 17.

이와 같이 취소처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가 사실상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계속 영업활동을 하는 편법이 가능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변경승인 시에 종전 승인은 폐지되는 다른 분야의 형식승인이나 인증 제도와 달리, 변경승인 시 종전 승인과 변경승인을 모두 독립적인 승인으로 인정하여 사실상 동일한 승인을 다수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현행 소방용품 형식승인제도의 특이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다른 분야의 인증제도는 형식승인이나 인증을 기능, 구조 등 일정 범주의 모델구분 기준을 설정하여 모델별로 승인·취소하여 관리하고 있음.

<모델별 인증관리제도 입법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

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1. ~ 10. (생략)

② (생략)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안전인증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형식승인·변경승인 또는 성능인증·변경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이 인증 취소 또는 제품검사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방용품 외에도 변경승인된 소방용품도 인증 취소 또는 제품검사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안 제39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

소방용품을 기능·용도 및 구조 등에 따라 분류한 개별항목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품목’으로 정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적시된 지적 사항을 감안할 때, 인증취소 또는 제품검사중지 처분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법적 효과가 해당 소방용품 외에도 변경인증으로 관련된 소방용품에도 동일하게 미치도록 하여 행정처분 이후에도 승인번호·성능인증번호만 다를 뿐 사실상 형상등이 동일한 소방용품을 제조·유통하는 행위를 실효성 있게 제재하고 제재

시 기준 단위가 되는 ‘품목’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현행법에 따른 형식 승인·성능인증 관련 행정상 제재처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첫째, 개정안 제39조제2항과 제42조제2항의 내용은 제재처분이라는 점에서 법문에 해당 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문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 제39조제2항과 제42조제2항의 문구를 살펴보면, 형식승인·변경승인 또는 성능인증·변경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방용품 외에도 그와 변경승인(변경인증)으로 관련된 소방용품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내용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의 경우에는 입법의 명확성 차원에서 준용 방식을 사용하기 보다는 직접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²³⁾. 또한,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경우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²⁴⁾.

23) 국회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21면 및 225면.

이에 개정안 제39조제2항과 제42조제2항은 제39조제1항과 제42조제2항을 준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재 처분의 주체, 사유, 대상,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문을 재구성하는 것이 법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임.

참고로 소방청은 동 개정안의 의미를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어 설명함.

24)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5.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 제39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 적용 예시>

구분	소방용품	품목	제조사 보유 형식승인			
			제조사명	최초승인	변경승인	변경사항 (<u>형상등의 일부변경</u>)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소화기	소화기(분말)	H 社	수소27-1	수소27-1-1	밸브변경
					수소27-1-2	용기변경
			C 社	수소27-2	-	
		소화기(강화액)	D 社	⋮	⋮	
			L 社	수소27-10	-	
				수소27-11*	수소27-11-1	강화액 성분 "A 사용"
					수소27-11-2	강화액 성분 "B 사용"
			T 社	⋮		
		⋮		⋮		
	⋮	⋮				

↳ [승인번호 부여 방식] 소방용품별 고유약칭 + 승인년도 + 승인순번

⇒ "수소27-1" 은 "소화기 中 '27년도에 첫 번째로 승인된 제품'을 의미

↳ [* 처분예시] 개정안(제39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에 따른 직접적 처분대상이 "수소27-11" 이라면, '해당용품(수소27-11)' 과 그와 관련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수소27-11-1, 수소27-11-2)' 모두에 동일한 처분(명령)을 적용케 됨
(→ "□" 표기 해당)

※ L 社 승인보유 "강화액 소화기" 구성도 예시

- ▶ "형상등"은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을 포괄하여 지칭하고 **제조사별/제품별 구성이 상이**하며,
- ▶ 구성도(좌측 그림)에서 **각각의 구성품과 구조** 등이 "형상등의 일부"에 해당 되며,
- ▶ "형상등의 일부" 가 임의로 변경되었다면, 행정처분(승인취소) 사유에 해당됨
- ※ "**품목**"은 "**강화액을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 전체라 정의할 수 있음

(자료: 소방청)

둘째, ‘품목’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 제2조제8호는 ‘품목’을 “소방용품을 기능·용도 및 구조 등에 따라 분류한 개별 항목²⁵⁾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소방청에 따르면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을 포괄하여 지칭한 용어인 “형상등²⁶⁾”은 소방용품이 기능을 발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별 기술기준 상에 명시된 필수 구성요소’인데 비해, “품목”이란 소방용품을 기능·용도·구조에 따라 구분하는 개념임.

<품목과 형상등의 개념 비교>

구분	품목	형상등
정의	소방용품을 기능·용도·구조 등으로 구분한 것	소방용품을 구성하는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에 따른 분류
분류 개요	동일 목적·기능을 수행하는 소방용품의 제품군 단위 ※ ‘형상등’ 대비 상위의 분류 개념	동일 품목에 속하는 소방용품의 기술적 사양(기술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세분화하여 구분하는 요소
목적	소방용품을 주된 기능, 사용목적, 작동원리 등에 따라 구분하기 위한 대분류 단위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 사양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분류

(자료: 소방청)

25) 소방청은 “항목”을 ‘구분 단위’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함.

26) 현행법상 “형상등”은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을 포괄하여 지칭한 용어로서, 소방용품이 기능을 발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별 기술기준 상에 명시된 필수 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형상등”의 일부 변경”은 변경인증 대상임(법 제38조제1항). 이는 변경인증은 ‘해당 소방용품이 지닌 주요기능과 용도는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기에 “형상등의 일부 변경” 시에만 변경인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별 세부 품목(안)>

구 분	소방용품명	품 목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소화기	소화기(이산화탄소)
		소화기(물)
		소화기(분말)
		소화기(강화액)
		소화기(침윤수용액)
		소화기(포소화약제)
		소화기(산알카리)
		소화기(가스계소화약제)
	자동확산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분사식)
		자동확산소화기(파열식)

(자료: 소방청)

다만, 개정안은 품목을 “기능·용도 및 구조 ‘등’”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여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하위 법령에서 분류기준을 확장할 여지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형식승인·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동일 ‘품목’에 대해 2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현행법 제39조제2항 및 제42조 제2항, 개정안 제39조제3항 및 제42조제3항) ‘품목’의 정의 방식에 따라 행정제재의 범위와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품목의 분류 기준을 법률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5.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제도 폐지

개정안은 소방용품에 대한 “우수품질인증” 관련 규정들을 삭제함으로써 해당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제44조 등).

현행	개정안
<u>제43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①</u> <u>소방청장은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u> <u>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u> <u>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u> <u>하여 인증(이하 “우수품질인증”이라</u> <u>한다)을 할 수 있다.</u> <u>②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행</u> <u>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u> <u>방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 <u>③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u> <u>는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u> <u>④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u> <u>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u> <u>⑤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u> <u>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u> <u>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u> <u>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u> <u>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u> <u>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u> <u>2.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발</u> <u>명진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u> <u>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u>	<삭 제>

현행	개정안
<u>다고 판단되는 경우</u>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기술 기준,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인증의 갱신, 수수료, 인증표시 등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소방용품을 변경 또는 신규 비치하여야 하는 경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49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제43조제5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6. (생략)	<삭 제> 제49조(청문) ----- -----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5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생략)	제5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43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삭제>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3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3조(수수료 등) ----- -----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제43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삭제>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43조는 소방청장이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는 품질 및 생산 공정이 일정 요건에 맞는지 검사하여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중에서도 성능 및 자체품질 관리 상태가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제품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되었음.

그런데,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면 형식승인 요건보다 까다로운 품질관리체계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인증을 받더라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노력 규정 외에 우수품질인증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제도 시행 이후 1개 업체, 3개 품목에 대해서만 인증 실적이 있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발급현황이 전무한 실정이고,

이러한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의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²⁷⁾ 결과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폐지 결정(2019. 12. 27.) 된 바 있음.

27)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는 단발적인 제도 개선에서 나아가 주기적·체계적으로 인증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개정(2018. 6. 12)을 통해 도입된 제도임.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 평가 등)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거나 적합성평가의 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적합성평가가 국제기준에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증명발급 현황>

업 체	품목	인증번호	세 목	인증일자
동방전자산업(주)	감지기	감97-12-4	정온식스포츠형	'14. 09. 20
	감지기	감00-25-2	광전식	'14. 09. 20
	감지기	감95-9-4	이온화식	'14. 09. 20
	감지기	감08-23-2	차동식스포츠형	'15. 11. 15
	수신기	수06-8	R형복합식	'15. 11. 15
	중계기	중07-38-1	R형용, 반도체식, 4회로	'15. 11. 15
	중계기	중02-8-4	R형용, 반도체식, 2회로	'15. 11. 15

(자료: 소방청)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는 소방용품의 품질 제고라는 바람직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품 유통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형식 승인과 중복된 형태로 운영되면서 인증수요가 전무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51

참고 1 소방용품 인증제도 개요

(자료: 소방청)

○ 인증제도의 정의

- 소방용품의 품질 및 생산 공정이 규정된 요건에 맞는지를 검사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하고 증명하는 제도

○ 인증제도 경과 및 효과

- 화재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소방용품 품질인증 제도가 1973년 제정
- 소방용품 성능 향상 및 품질 경쟁력 상승으로 수출 증대 기여

○ 인증 종류

구분	형식승인('73년~)	성능인증('86년~)	우수품질인증('14년~)	KFI인증
근거	제37조 ²⁸⁾	제40조 ²⁹⁾	제43조 ³⁰⁾	KFI 자체규정 ³¹⁾
인증 의무	의무사항	임의사항	임의사항	임의검사
	미검정품 유통불가	미검정품 유통가능	미검정품 유통가능	미검정품 유통가능
인증 업무 위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제50조제2항)			-
품목	소화기 등 32개	소화전함 등 52개	소화기 등 32개	내진스토퍼 등 34개 (소방장비 별도)

○ 타국의 인증제도

-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유사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간 상호 인정협정(MRA³²⁾)은 체결하고 있지 않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30) ① 소방청장은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31) KFI인증이란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품목 이외에 소방차 등 64개 품목에 대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여부 판단하는 임의검사임

32)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각국의 인정기관 간에 인정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동 협정에 가입한 타국의 인정기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에 대하여 자국의 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인정

* 미국(UL,FM마크), 독일(VdS마크), 영국(LPCB마크), 일본(NS마크), 중국(CCC마크)

○ 인증업무 위탁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위탁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참고 2

소방용품 형식승인 · 성능인증 · 우수품질인증 비교

(자료: 소방청)

유형	의무인증	임의인증	
	형식승인	성능인증	우수품질인증
인증 절차	< 신청서 접수 >		
	- 관련 서류 - 견본품		
	< 신청서류 검토 >		
	- 신청서류 적합성 검토 - 견본품과 신청서류 일치성 검토		
	형식시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에 맞는지를 시험	성능시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하 “성능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시험	인증시험 우수품질인증제품의 기술기준(이하 “우수품질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시험
	< 시험시설 심사 > 제조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험시설이 시설기준(이하 “시험시설기준”)에 맞는지를 심사		< 품질관리체계 평가 > 우수품질관리체계의 평가기준(이하 “품질관리체계 평가기준”)에 맞는지를 심사
제품 검사	형식승인서 발급	성능인증서 발급	우수품질인증서 발급
	생산제품검사 < 생산제품검사 > 생산된 소방용품을 출고하기 전에 형상등이 형식승인기준·성능인증기준등에 맞는지를 검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시험시설로 기술원·제품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 ** 사업장에서 시행할 수 없는 시험은 제품을 수거하여 기술원·제품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		
	합격표시 부착		
	품질제품검사 < 품질제품검사 > 공정심사 소방용품 제조과정 등의 품질관리체계를 심사 정밀검사 생산된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형식승인기준·성능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검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품수거 후 기술원·제품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		
수집검사	합격표시 부착		
	소방청에서 유통중인 소방용품을 수거 후 기술원 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년 2회, 상·하반기)		

참고 3 형식승인/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

(자료: 소방청)

○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구 분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시행령 제6조 관련 및 별표3)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기구(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소화용구)
	나. 자동소화장치(주거용, 캐비닛형,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공동용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
3. 피난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 포함)
	나. 공기호흡기(충전기 포함)
	다.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약제
	나. 방염제(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관련 제품 또는 기기	

○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	
규칙 제15조제1항 관련 및 별표 7	(21. 그 밖에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용품)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1. 축광표지 2. 예비전원 3. 비상콘센트설비 4. 표시등 5. 소화전함 6.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가지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플렉시블 파이프를 말한다) 7. 소방용전선 8. 탐지부 9. 지시압력계 10. 삭제 11. 공기안전매트 12. 소방용밸브(개폐표시형, 릴리프, 푸트) 13. 소방용 스트레이너 14. 소방용 압력스위치 15.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6.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17.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18. 소화설비용헤드(물분무, 분말, 포, 살수) 19. 방수구 20.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 21. 소방용흡수관 22. 그 밖에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용품	1. 분기배관 2. 포소화약제혼합장치 3.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4. 시각경보장치 5. 자동차압급기댐퍼 6. 자동폐쇄장치 7.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 8. 피난유도선 9. 방염제품 10. 다수인피난장비 1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2. 승강식피난기 13. 미분무헤드 14. 방열복 15.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16. 압축공기포헤드 17. 압축공기포혼합장치 18. 플랩댐퍼 19. 비상문자동개폐장치 20.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21. 휴대용비상조명등 22. 소방전원공급장치 23.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 24. 과압배출구 25. 흔들림 방지 버팀대 26. 가스계소화설비헤드 27. 소방용 행가 28. 간이형수신기 29. 방화포 30. 간이소화장치 31. 유량측정장치 32. 배출댐퍼 33. 송수구